

## 주택관계법규 문제집 수정사항

문제집 수정사항을 올려드립니다. 제가 좀 자세하게 보기는 했지만 몇부분에서 오타나 오답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한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시면 제 **밴드(네이버 밴드에서 조민수 또는 관계법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)에서** 질문 주시면 정확하게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.

페이지	수정 후	비고		
p67	<p>52. 다음은 주택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</p> <p>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「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①의 경우에 승강기,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,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④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정답 ⑤ <b>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</b>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/p>	52번 문제 삭제 후 대체		
p127	<p>3번문제 ③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경우 <b>입주자등</b>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방법 결정을 요구하여야 하며, <b>입주자등</b>은 사업주체의 관리방법 결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.</p>	수정		
p243	<p>(5) 이행강제금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02 981 1870 1145"> <tr> <td data-bbox="302 981 504 1145">부과횟수</td> <td data-bbox="504 981 1870 1145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·징수한다.</li> <li>단,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<b>60㎡ 이하</b>이거나,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, 조경 위반인 경우, 높이제한(일조제한 포함) 위반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<b>1/2의 범위 안에서 부과한다.</b> (<del>5회 이내에서</del> 삭제)</li> <li>• 영리목적 또는 상습위반 등 ⇨ <b>100/100 내에서 가중</b>할 수 있다.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부과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·징수한다.</li> <li>단,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<b>60㎡ 이하</b>이거나,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, 조경 위반인 경우, 높이제한(일조제한 포함) 위반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<b>1/2의 범위 안에서 부과한다.</b> (<del>5회 이내에서</del> 삭제)</li> <li>• 영리목적 또는 상습위반 등 ⇨ <b>100/100 내에서 가중</b>할 수 있다.</li> </ul>	수정
부과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·징수한다.</li> <li>단,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<b>60㎡ 이하</b>이거나,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, 조경 위반인 경우, 높이제한(일조제한 포함) 위반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<b>1/2의 범위 안에서 부과한다.</b> (<del>5회 이내에서</del> 삭제)</li> <li>• 영리목적 또는 상습위반 등 ⇨ <b>100/100 내에서 가중</b>할 수 있다.</li> </ul>			